

# 법률의견서

사 건 2025도5284 공무집행방해 등  
피 고 인 현은정, 현진희  
의 견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2. 법학교수 박성호, 박태현  
3. 변호사 강미 외 165명

대법원 제1부 귀중

# 법률의견서

사 건 2025도5284 공무집행방해 등  
피 고 인 현은정, 현진희  
의 견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2. 법학교수 박성호, 박태현  
3. 변호사 강미 외 165명

위 사건에 관하여 의견인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 다 음

### 1. 이 사건의 경위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뒤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판장 오창훈은 경위 4~5명을 피고인과 변호인 주변에 배치하고,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 한숨도 쉬지 말라, 탄식도 하지 말라. 눈으로만 봐라 내가 하는 말은 명령이다. 만일 이를 어길시 구속하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심의 절차진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 2.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 가. 관계 법령

####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 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위반

형사사건에서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법정에서 직접 가지게 된 각자의 판단을 기초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귀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판시하여 양형에 대해서도 제1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심은 항소심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어떠한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재판장이 아닌 재판부 법관은 법정 심리를 통하여 형성된 판단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는 원심 2025. 3. 27.자 공판조서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재판절차 진행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 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 적법절차원칙(합의 과정의 부존재) 위반

합의부가 합의를 거쳐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 것(법원조직법 제66조)은 법관 3명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합의에 관여하고 의견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에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합의부의 각 법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부의 각 법관은 재판에서 스스로 의견을 밝히고 독립적으로 합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경중을 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중한 법정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법원조직법 제32조)하고 단독판사가 한 1심 판결의 항소심을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형사소송법 제357조)은, 여러 명의 법관이 머리를 맞대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보완하여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법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부 재판에서 이러한 합의과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하도록 한 제도의 목적 자체를 무시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합의심판을 통해 재판을 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66조를 위반하였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 3. 결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 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가지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사법권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합의부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원심의 독단적이고, 비인도적인 재판진행으로 피고인만이 아니라 변호인, 방청객도 큰 충격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재판부가 다른 사람의 위에 있는 듯 어떠한 존중도 없는 태도로 마음대로 법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2년경 김용현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률신문에 "합의부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김용현 판사는 당시 "현행 사법부를 '그들만의 사법'이라 칭하며 실질적인 합의제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002. 1. 30.자 법률신문 논평(김용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참조]

모든 사건을 실질적인 3인 합의제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건의 적체와 지연은 엄청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법관을 비롯한 인적, 물적 시설의 몇 배 증원이 필요할 터인데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일인가. 서울지법 본원만 하나 더 만들려고 해도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가. 지금의 합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실질적인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제반 여건을 두루 고려해 보면 그래도 지금의 상황 하에서는 현재의 합의부 운영이 그나마 최선이다.

...(중략)...

그러기 위하여는 합의부 운영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실질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합의의 방법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에 '다만, 제1심 합의부는 달리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위 글이 쓰여진지 23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법원의 합의부는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률신문에 "합의재판을 합의재판답게"라는 글을 통해 현재 합의부 재판에서 합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시 지적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2025. 6. 14.자 법률신문 논평(노수환 교수) 참조).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관행이 아예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판결을 한 이 사건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심은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공판  
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  
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6. 30.

**대법원 제1부 귀중**

[별지]

의견인 목록

1. 참가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2. 법학 교수

박성호, 박태현 / 총 2명

3. 변호사

강미, 강미술, 강솔지, 강송욱, 강은옥, 강호민, 광예람, 구인호, 권석현, 권용,  
권정호, 권호현, 김단영, 김도희, 김동창, 김민수, 김산하, 김상연, 김상은,  
김세희, 김슬기, 김시은, 김영희, 김예니, 김예지, 김유정, 김은진, 김재희,  
김지혜, 김진형, 김치라, 김태욱, 김하경, 김하나, 김현근, 김형찬, 김혜은,  
김희선, 나동환, 남성욱, 남혜선, 노푸른, 노혜성, 도춘석, 류다솔, 류혜정,  
문은영, 박경찬, 박계성, 박동훈, 박미혜, 박민서, 박삼성, 박선아, 박소영,  
박순덕, 박아롱, 박예안, 박인동, 박정원, 박지아, 박지은, 박치현, 박현근,  
박호균, 백신옥, 범유경, 서범진, 서선영, 서성민, 서채완, 성창익, 성춘일,  
소병선, 소현민, 손준호, 손충환, 송병춘, 신선아, 신세영, 신영훈, 신예지,  
신윤경, 신흠민, 안한진, 양성우, 양정규, 양현준, 여연심, 오세범, 오현희,  
윤복남, 윤재은, 이강훈, 이덕우, 이동구, 이동주, 이보람, 이선민, 이승익,  
이에린, 이영기, 이에인, 이은중, 이재호, 이정민, 이정희, 이종진, 이종훈,  
이주연, 이학준, 이희영, 임수진, 장범식, 장석우, 장유식, 장철순, 장훈열,

전다운, 전시은, 전정환, 정기호, 정병욱, 정우진, 정은영, 정재현, 정진아,  
정효주, 조경애, 조민지, 조민희, 조세화, 조영보, 조영은, 조윤희, 조인영,  
조지훈, 조현삼, 조현주, 조혜인, 조혜진, 차성욱, 차유정, 최새얀, 최석군,  
최용근, 최용현, 최윤석, 최재홍, 최정규, 최지영, 최현준, 최효재, 하경남,  
하성협, 하승수, 하주희, 하태승, 한명욱, 한상원, 한주현, 함승용, 현지현,  
홍정훈, 황선기, 황호준 / 이상 166명